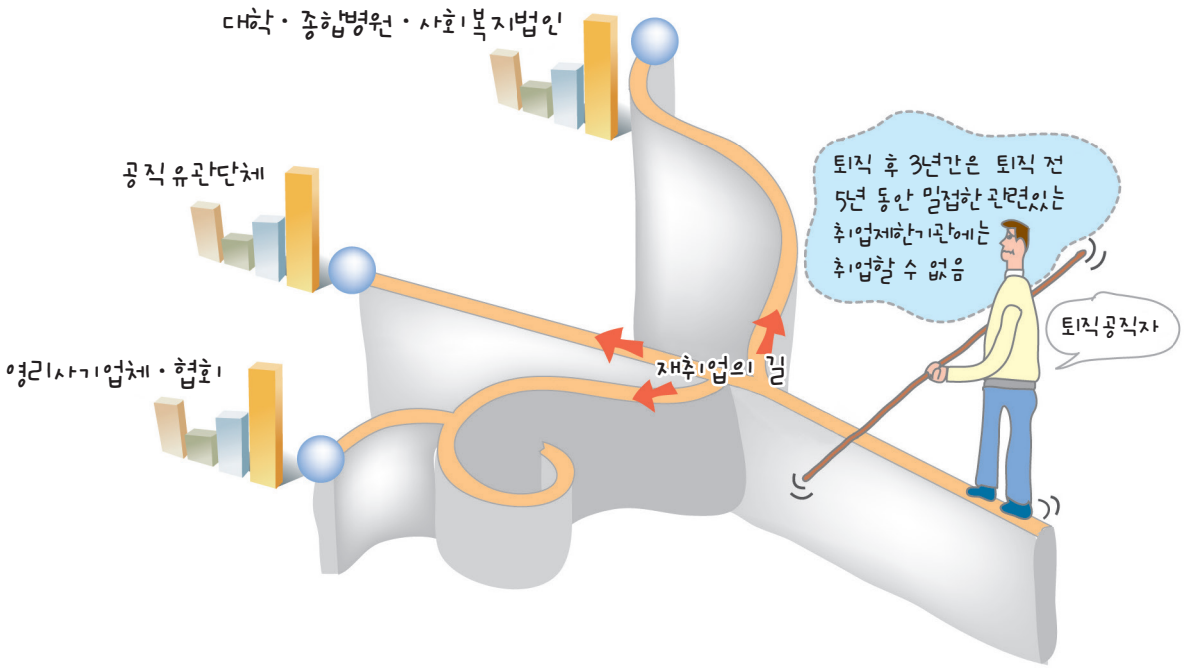
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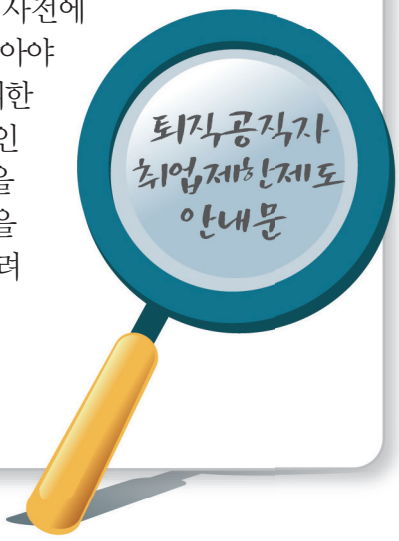


안녕하십니까?

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간('15.3.30.이전 퇴직자는 2년간)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습니다.

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"취업제한여부 확인" 또는 "취업승인"을 받아야 하고,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,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,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따라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차례/Contents



01 취업제한

근거

공직자윤리법 제17조, 제18조 및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

※취업의 범위

'상법'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
대상

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(법 제3조, 시행령 제3조)

– 보통 4급 이상의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
– 특정분야의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

제한 내용

–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

※ 업무관련성 적용구분

소속하였던 부서 : 3급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에 적용
소속하였던 기관 : 재산공개대상자,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적용

업무관련성 판단기준

-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·장려금·조성금 등을 배정·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
-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생산방식·규격·경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조세의 조사 ·부과·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공사,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
-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
-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(시행령 제32조제2항)

– 공직자윤리위원회의 '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' 또는 '취업승인 심사'에서 '취업가능' 또는 '취업승인'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

–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취업할 수 있음

* 변호사 ⇨ 법무법인등, 회계사 ⇨ 회계법인, 세무사 ⇨ 세무법인

*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이상 공무원등 재산공개대상자로 퇴직한 자는 해당분야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하여야 함



취업제한기관

구분	지정기준
영리사기업체	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
법무/회계법인	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
세무법인	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
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	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
협회 · 조합	영리사기업체 가입하고 있는 법인 · 단체
시장형 공기업	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기업
공직유관단체	안전감독, 인허가 규제, 조달 업무 수행기관
사립대학	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 •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• 경영하는 사립학교
종합병원	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
사회복지법인	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 법인

※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 (협회는 6월 말)

※ 취업제한기관 조회 방법

– 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.go.kr)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훈령/예규/고시 → 취업제한기관 고시

– 대한민국전자관보(gwanbo.mois.go.kr)

취업이력 공시

근 거 :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

대 상 :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※ 2급 이상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

내 용 :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이력을 지정 인터넷 사이트에 매년 2월말 공시

※ 위 취업심사대상자는 해당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

위반시 제재

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 :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취업제한 위반자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

※ 병과 가능

02 업무취급 제한

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!

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9조

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
내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**일정업무**
(법 제17조제2항 각 호) 퇴직 후 취급 금지



위반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2급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취급금지!

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, 제18조의3,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의3

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
※ 재산공개대상자, 2급 이상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

내용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**일정업무**
(법 제17조제2항 각 호) 취급 금지



위반시 제재 5천만원 이하 과태료

일정업무(법 제17조제2항 각 호)

-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· 장려금 · 조성금 등을 배정 ·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
- 인가 · 허가 · 면허 · 특허 ·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생산방식 · 규격 · 경리 등에 대한 검사 ·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조세의 조사 · 부과 ·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공사, 용역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 · 검사 ·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
-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·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
-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(시행령 제32조제2항)

업무내역서 제출 의무

– 제출시기 :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

– 제출내용 :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, 업무취급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



– 제출절차 :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
② 소속기관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
③ 소속 중앙행정기관(지방자치단체)장은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
※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

– 위반 시 제재 : 업무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03 부정한 청탁·알선 금지 등

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·알선행위 금지!

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4

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
내용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· 알선 금지

위반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

재직공직자 등의 행위 금지!

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, 제22조제17호, 제23조

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
내용
- **재직자** :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청탁금지
- **기 관** :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알선 금지

위반시 제재
- 재직자 : 징계의결 요구
- 기 관 : 시정권고

재직자 등의 취업청탁·알선 금지!

※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(법 제22조, 제23조, 제29조, 제30조)

구분	벌칙 징계 및 과태료	위반 내용
취업 제한 위반	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	■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
	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	■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
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	■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■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■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
업무 취급 제한 위반	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	■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
	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	■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
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	■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
행위 제한 위반	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	■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
	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	■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·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■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
	시정권고	■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